



중국의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법제

■ 신청기관 : (주)두산 관리본부

1. 서문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중국의 네티즌 규모는 5.91억에 달하고 인터넷보급율은 44.1%에 달한다고 하였다.¹⁾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²⁾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상황을 살펴보면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민법·행정법·형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 특히 2012.12.18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인터넷정보보호 강화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決定, 이하 결정)은 중국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에서 공포한 정보안전기술 공공 및 상업서비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침(信息安全技术公共及商用服务信息系统个人信息保护指南 2013.2.1 실시, 이하 지침)은

1) 중국인터넷정보센터, 제32차 중국인터넷발전상황통계보고서, 2013 참조.

2) 2011년 12월 중국 CSDN 웹사이트에 등록된 600만 전자우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중국인터넷상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4.5.15 방문.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첫 번째 전문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그 외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약관 및 인터넷사업자협회의 공약 등을 통하여 자율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II. 중국 인터넷상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1. 민법적 보호

현재 중국 민법상 개인정보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프라이버시권(隱私權)을 통한 보호방식을 취하고 있다.³⁾⁴⁾ 현재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논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제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⁵⁾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로서 2009년에 공포된 불법행위책임법 제2조와 제36조의 규정을 들 수 있다. 불법행위책임법 제2조는 민사권익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민사권익은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인터넷불법행위에 관하여 인터넷이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할 경우 불법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차단·링크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제공자가 통지를 받은 뒤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될 경우,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적 권익을 침해한 사실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3) 개인정보권과 프라이버시권은 서로 연관되면서도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 해당 구별에 관해서는 王利明: “论个人信息权的法律保护——以个人信息权与隐私权的界分为中心”, 现代法学, 2013年7月 第35卷第4期 참조.

4)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법률문서에서는 개인정보권과 프라이버시권의 구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정 제1조에서는 “국가는 식별이 가능한 공민개인신분과 공민개인프라이버시에 관한 전자정보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신분에 관한 정보와 개인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중국에서 개인정보권과 개인프라이버시권의 구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정탁,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2012년, <http://journal.kiso.or.kr/?p=617>(2014.5.17 방문); 정하명, 중국 정보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처 연구보고서, 2010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설명에서 중국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경우 인터넷 사용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2. 행정법적 보호

행정법상의 보호상황을 살펴보면,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행정법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서비스를 규범화하기 위한 각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법규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일부 조항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일정한 연관이 있는 행정법규로서公安部(公安部), 國家保密密局(國家保密密局), 國家密碼管理局(國家密碼管理局), 國務院信息工作辦公室(國務院信息工作辦公室), 4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信息安全等級保護管理辦法(信息安全等級保護管理辦法 2007.6.22 실시, 이하 등급보호관리방법)이 있다. 이 등급보호관리방법에서 정보시스템의 안전보호등급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國家安全·經濟建設·社會生活 中에서의 重要程度 및 정보시스템이 침해를 받은 후, 國家安全·社會秩序·公共利益 및 公民·法人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의 受害程度 등 요인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해당 관리와 감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감독은 개인정보의 보호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國務院信息工作領導小組辦公室(國務院信息工作領導小組辦公室)에서 제정한 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管理暫行規定實施辦法(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管理暫行規定實施辦法, 1998.3.13 실시)⁷⁾ 제18조에서는, 인터넷 연결은 해당 부서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정보를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國務院에서 제정한 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 2000.9.25 실시)에서는 인터넷정보를 게재하는 모든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포럼·블로그 등을 통하여 정보를 게시하려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실제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정보제공자와 인터넷접근제공자는 이용자의 로그인 정보 등록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6) 인터넷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하여 불법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조조서, “중국의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267면 이하 참조.

7) 이는 중국 국내 인터넷통신망과 외국의 인터넷통신망의 연결과 관련된 사항을 규범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변경·공개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명령·불법거래이익의 몰수·불법거래로 취한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또는 100,000~150,000위안의 벌금(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50,000위안 미만인 경우)이 부과되며, 중대위반의 경우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추가적인 벌칙이 부과된다.⁸⁾

국무원정보산업부에서 제정한 인터넷전자공고서비스관리규정(互联网电子公告服务管理规定 2000.10.8 실시) 제12조에서는, 전자공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며,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유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국무원정보산업부(国务院信息产业部)에서 제정한 인터넷전자메일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电子邮件服务管理办法 2006.3.20 실시) 제9조에서는, 인터넷전자메일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와 인터넷전자메일주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인터넷전자서비스제공자 및 해당 근무인원은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자료와 이메일 주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정보와 인터넷전자메일주소를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행정법규에서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한다.

개인신용정보기초 데이터베이스관리 잠정방법(个人信用信息基础数据库管理暂行办法 중국 인민은행 공포, 2005.10.1 실시)는 개인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법규이다. 본 방법은 총칙·데이터의 제출과 정리·조회·이의처리·안전관리·벌칙·부칙을 포함한 7개 장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유통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⁹⁾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에서 공포하여 2013.9.1부터 실시된 전신과 인터넷사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规定)은 6장 25개 조항으로 이루어 졌는데, 전신과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범위, 사용자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원칙, 사용자 개인정보수집과 사용규칙, 대리상에 대한 관리, 안전보장제도, 감독검사제도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8)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 개인정보보호 해외 법제 동향”, 2012.7, 3면.

9) 본 규정은 2003.12.23 상해시에서 공포한 상해시 개인신용조회관리시행방법(上海市个人信用征信管理试行办法)의 내용과 유사하다.

3. 형법적 보호

형법 개정안(7차)(2009.2.28)이 실시되기 전 형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고, 비법수사죄(형법 제245조)·주택비법침입죄(형법 제245조)·통신자유침범죄(형법 제252조) 등 규정들은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그 후 형법 개정안(7차)을 통하여 형법에 국민 개인정보판매·비법제공에 관한 죄(형법 제253조의1)를 신설하였는데 국가기관 또는 금융·전신·교통·교육·의료사업 등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조직이 직무이행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취득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을 단독 부과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범죄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행위방식에 대한 규정의 한계성 때문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위 죄명이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¹⁰⁾

4. 인터넷상 정보보호 강화 결정

최근 인터넷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 비추어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별히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결정을 공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의 범위 및 불법행위 금지

국가는 식별이 가능한 국민의 개인신분과 국민의 프라이머시에 관한 전자정보를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이를 절취 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하지 못하며, 이를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10) 赵秉志主编, “侵害公民个人电子信息的侵权行为及其责任”,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3年 第3期, 148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 관련 사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기타 사업자는 업무활동 중에서 국민의 개인전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합법적 원칙·정당성 원칙·필요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수집·사용의 목적·방식·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수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3)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유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기타 사업자 및 근무인원은 업무활동 중에서 수집한 공민개인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지키고 유출·변경·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를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및 비상대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기타 사업자는 반드시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정보의 유출·변경·분실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의무와 보고의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반드시 사용자가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법규에서 금지한 정보를 게재하였을 경우,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불법기록을 보존하고 주관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인터넷서비스제공 시의 실명제 요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링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화·핸드폰 등의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게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사용자와 협의를 달성하고 사용자가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7) 상업적 전자정보 전송 관련 사항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전자정보접수자의 동의나 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자정보접수자가 명확히 거부할 때, 유선전화·이동전화 또는 개인전자메일에 상업적인 전자정보를 발송하여서는 안 된다.

8)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피해 확대방지 조치

개인신분이 유출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인터넷정보를 접했을 경우 또는 상업적 메일의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소식을 삭제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민원제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절취 또는 기타 불법적 방식으로 취득·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공민의 개인전자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범죄행위 및 기타 인터넷정보와 관련된 위법범죄행위에 대하여 유관 주관부서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해당부서는 반드시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 주관부서의 의무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범위 내에서 직책을 이행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전자정보침해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직무이행 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이에 협력하고 기술적 조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및 근무인원은 직무이행시 공민의 개인전자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유출·변경·파기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1) 벌칙

이를 위반한 결정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경고·벌금·위법소득의 몰수·영업허가취소 등록 취소·인터넷사이트폐쇄·책임자가 인터넷서비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사회신용기록에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며,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타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III. 자율규제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1. 개요

현재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입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부 정보수집자들은 정보제공자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약관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대형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많이 취하고 있다.¹¹⁾

또한 중국 인터넷협회는 2002년에 중국 인터넷사업자협회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관련 업체들이 본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자각적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용자의 정보비밀을 지키며,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무관한 활동을 하지 않으며, 기술 또는 기타 우세를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인터넷협회는 협약의 실시를 책임지고, 협약참가자한테 인터넷관리와 관련된 법률·정책을 전달하고 본 협약의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2013.2.1부터 실시된 본 지침은 은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첫 번째 전문적인 기준으로

11) 일부 유명한 포털 사이트 예컨대 www.sina.com.cn에서는 회원들에게 프라이버시보호약관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서 자율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의 구성 및 개요〉

1. 범위	정부기관 등 공공관리 직책을 행사하는 부서 제외
2. 규범성 인용문건	본 지침은 아래 의 문건을 인용하여 적용한다. GB/T 20269-2006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요구 GB/Z 20986-2007 정보안전기술 정보안전사건 유형·등급 구분에 관한 지침
3. 술어와 정의	아래와 같은 총 11개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3.1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3.2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3.3 개인정보주체(subject of personal information) 3.4 개인정보관리자(administrator of personal information) 3.5 개인정보취득자(receiver of personal information) 3.6 제3자평가기구 (third party testing and evaluation agency) 3.7 개인민감정보(personal sensitive information) 3.8 개인일반정보(personal general information) 3.9 개인정보처리(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3.10 묵시적 동의(tacit consent) 3.11 명시적 동의(expressed consent)
4. 개인정보보호 개요	4.1 역할과 직책 4.2 기본원칙
5. 개인정보보호	5.1 개요 5.2 수집단계 5.3 가공단계 5.4 이전단계 5.5 삭제단계

1) 지침의 적용범위

지침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과정을 규범화하고, 개인정보처리의 각 단계에서 개인 정보의 보호에 지도적 역할을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그 적용대상은 정부기관 등 공공관리 직책을 행사하는 부서 이외의 각종 조직·기구, 예컨대 정보통신·금융·의료 등 서비스 제공기구의 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사업으로 하고 있다.

2) 규범성 인용문건

본 지침은 “GB/T 20269-2006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요구” 및 “GB/Z 20986-2007 정보안전기술 정보안전사건 유형·등급 구분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3) 용어와 정의

본 지침의 세번째 부분에서는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음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침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란(personal information) 정보시스템이 처리하는 특정 자연인과 관련되고,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부하여 특정 자연인을 구별할 수 있는 컴퓨터데이터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민감정보(personal sensitive information)와 개인일반정보(personal general inform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지침에서 규정한 개인민감정보란 정보가 누설되거나 또는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불량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각 업종의 개인민감정보의 구체적 내용은 서비스를 받는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와 각자 업무의 특성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분증번호·핸드폰번호·민족·정치적 관점·종교신앙·유전자·지문 등을 포함한다. 개인일반정보는 개인민감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가리킨다.

4) 개인정보보호 개요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4.1 개인정보의 역할과 직책 및 4.2 기본원칙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주동적으로 개인정보관리자의 정보수집의 목적·용도 등을 알아보아야 하고,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분실·변경되었을 경우 개인정보관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부문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관리자는 국가의 법률·법규 또는 앞에서 지정한 기술적 문건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절차를 정하고, 개인정보관리제도를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관리책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구 또는 직원이 내부의 정보보호업무를 책임지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주체의 민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건립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

상황·보호제도 및 해당 조치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독립적인 평가기구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분실·변경되었을 경우, 개인정보관리자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고 사건의 진일보 확대를 막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제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때에 개인정보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관리부서의 검사·감독·지도를 받아야 하며, 제3자 평가기구가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득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탁가공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얻게 될 경우, 본 지침의 규정과 위탁계약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을 마친 후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자 평가기구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부문과 사업자협회의 수권 또는 개인정보관리자의 위탁에 따라 국가 법률·법규·본 지침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테스트와 평가를 진행하여 개인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의거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 4.2 기본원칙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8개 원칙이 규정되고 있다. 즉, ①목적 구체성의 원칙, ②사용제한의 원칙, ③공개고지의 원칙, ④개인동의원칙, ⑤정보성 확정의 원칙, ⑥안전보장원칙, ⑦신의성실의 원칙, ⑧책임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1980.9.23. 발효된 OECD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프라이버시 8원칙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5)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은 개인정보의 수집·가공·이전·삭제 등 네 개 주요절차로 이루어지며,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수집단계

개인정보의 수집은 특정적이고 명확하고 합법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개인정보주체가 알기 쉬운 방식을 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수집방식과 수단·수집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기타 조직·기구에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이전·위탁의 목적·구체내용·사용범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해당정보가 일반정보일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을 명확히 반대할 경우에는 수집행위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

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민감정보일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해당 목적을 만족시킬 정도의 최소량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수집자는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단과 방식으로 직접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은밀한 수단·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의 수집을 조절하거나 폐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행위제한능력자·행위무능력자한테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 후견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가공단계

개인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이미 고지한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목적을 초월하여 개인정보를 가공하지 못하며, 이미 고지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공과정 중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목적과 무관한 개인·조직·기구가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개인·조직·기구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가공과정 중에서는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개인정보가 완전하고, 사용가능한 상태에 처하도록 하며, 데이터의 최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하자를 발견하고 수정을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해당 정보를 수정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가공단계에서는 개인정보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하여 조회할 때, 개인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 및 가공상태 등 내용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하는 비용 또는 청구하는 횟수가 합리적인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는 별도로 한다.

(3) 이전단계

이전단계에서도 수집단계에서 고지한 목적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조직·기구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본 지침에서 지정한 기술적 문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계약을 통하여 해당 조직과 기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관리자는 이전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이전 전후에 개인정보의 완전성·사용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하고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주관부서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의 개인정보취득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 대상에는 국외의 개인 또는 국외에서 등록한 조직과 기구도 포함한다.

(4) 삭제단계

개인정보주체가 정당한 이유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제때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의 삭제가 법률집행기구의 증거수집에 영향을 줄 경우, 적당한 조치로 이를 저장하고 외부접속차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집단계에서 고지한 사용목적에 도달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계속적으로 처리할 경우, 그 중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야 하며, 개인민감정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면 개인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집단계에서 고지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초과한 경우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정보보존기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관리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게 되어 이미 승낙한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삭제가 법률집행부문의 증거수집에 영향을 줄 경우 이를 적당하게 저장하거나 외부접속 차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V. 결어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법제에 대한 입법상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다수 존재하나, 규정상 서로 중첩된 부분이 많고 다른 한편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행정법상 행정관리의 목적으로 인터넷공지·인터넷전자메일 등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통합적인 규정을 두어 인터넷 관련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원칙적이고 개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벌칙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식의 결여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현재 법규정은 피해에 대하여 벌칙을 두더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중시하고 민사적 구제를 경시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개인정보주체가 민법상의 구제방식은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통하여 사후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데, 프라

이버스권과 개인정보권의 보호범위는 차이가 존재함으로 보호의 한계가 존재하고,¹²⁾ 다른 한편 대량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받은 주체가 많을 경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와 같은 개인정보단체소송에 관한 전문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규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부 대형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약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실행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형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아직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중국 인터넷협회에서는 협회회원의 개인정보보호 상황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하지만 자율규제의 역할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문제에 관해서 각자 영역에서도 법규정을 보완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어떠한 개인정보법을 제정할 지에 관하여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정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방식으로서¹³⁾ 현재 많은 학자들이 개인정보권을 사권으로 인정하고, 정보수집자와 통제자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설정해 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¹⁴⁾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고, 2012년의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결정 및 2013년 지침의 제정 등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무단히 보완할 의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선 화

(중국 연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중국 변호사)

12) 조조서, 앞의 논문, 279면 참조.

13) 王利明, “论个人信息权的法律保护——以个人信息权与隐私权的界分为中心”, 现代法学 第35卷 第4期, 2013年7月, 70면.

14) 王利明, “论个人信息权的法律保护——以个人信息权与隐私权的界分为中心”, 现代法学 第35卷 第4期, 2013年7月; 肖少启·韩登池, “论我国个人信息法律保护的制度构建”, 中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19卷 第4期, 2013年8月; 涂慧, “试论中国个人信息的法律保护”, 西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40卷第2期, 2010年3月; 王兵·郭垒, “网络社会个人信息侵权问题研究”, 西南交通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12卷 第2期, 2011年3月 참조.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기획부, “개인정보보호 해외 법제 동향”, 2012.7.
- 정하명, “중국 정보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처 연구보고서, 2010.
- 정탁,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2012년 <http://journal.kiso.or.kr/?p=617>.
- 조조서, “중국의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2014.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 개인정보보호 해외 법제 동향”, 2012.7.
- 王兵‘郭堃, “网络社会个人信息侵权问题研究”, 西南交通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12卷第2期, 2011年3月.
- 王利明, “论个人信息权的法律保护——以个人信息权与隐私权的界分为中心”, 现代法学 第35卷 第4期, 2013年7月.
- 杨亚丽, “我国个人信息保护法律探微”, 中州大学学报第28卷第3期, 2011年6月.
- 涂慧, “试论中国个人信息的法律保护”, 西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40卷第2期, 2010年3月.
- 肖少启‘韩登池, “论我国个人信息法律保护的制度构建”, 中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19卷第4期, 2013年8月.
- 孙昌兴‘秦洁, “个人信息保护的法律问题研究”, 北京邮电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0年2月, 第12卷第1期.
- 赵秉志主编, “侵害公民个人电子信息的侵权行为及其责任”,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第3期, 2013年.